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52974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960,305원 및 그 중,
가. 78,67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9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8,3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11. 접수 제68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신용카드 원리금 합계 19,960,305원 및 그 중 원금 일부 78,670원에 대하여는 정산일 다음날인 202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 일부 900,000원에 대하여는 정산일 다음날인 202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 일부 18,300,000원에 대하여는 정산일 다음날인 202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1. 6. 11.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이 피고 C과 혼인하기 이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고 구입한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11. 접수 제68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별지